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95호 2012. 11. 16(금)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63호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2-170호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6
○ 사천시 고시 제2012-178호 용정천 하천점용 허가사항 고시	40
○ 사천시 고시 제2012-1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41
○ 사천시 고시 제2012-18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44
○ 사천시 고시 제2012-185호 사천강 하천점용 허가사항 고시.	45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2-715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46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63호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11월 1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

[별표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제13조 관련)

등급	분 류 기 준	
비 공 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공간 정보	<p><항공사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p> <p><위성영상>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p> <p><수치지도>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p> <p><기타공간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p>
공 개 제 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공간정보 ◦공개 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공개 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되는 공간정보
	공간 정보	<p><항공사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p> <p><위성영상>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p>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4)

등급	분 류 기 준	
공 개 제 한	공간 정보	<p><수치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 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송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그 밖의 관 : 그 밖의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 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p><기타공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
공 개	지리 정보	<p>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 이외의 지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지리정보 <p><항공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p>* 단, 국정원장이 별도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50cm급 항공사진은 일반인 대상 제공 또는 판매시 기록유지를 생략 할 수 있다.</p>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5)

등급	분 류 기 준	
공 개	지리 정보	<p><위성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 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장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p><수치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 유지 <p><기타지리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 “비공개” 및 “공개제한” 이 아닌 공간정보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6)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2 - 170호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사 천 시 장

□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

-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경상남도에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조성과 적기공급, 서부지역 성장유도, 산업단지조성에 의한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을 통해 사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888-3번지 일원
- 나. 면 적 : 41,823㎡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3. 12. 31.까지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 삼원전기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임 기 오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동 26-12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장	도	잡	채	임	대	구	담
필지수	24	2	2	2	1	9	5	2	1
면적(m ²)	41,823	10,331	504	13,103	893	8,017	8,598	194	183
구성비(%)	100	24.7	1.2	31.3	2.1	19.2	20.6	0.5	0.4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소계	농림수산 식품부	국 토 해양부	기 획 재정부	한국농어 촌공사	소계	사천시	
필지수	24	13	2	2	8	1	-	-	11
면적(m ²)	41,823	19,924	214	1,257	18,333	120	-	-	21,899
구성비(%)	100	47.6	0.5	3.0	43.8	0.3	-	-	52.4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8)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41,823	100.0	
산 업 시 설 공 간	24,289	58.1	
지 원 시 설 공 간	2,611	6.2	
녹 지 시 설 공 간	6,979	16.7	
녹 지	6,123	14.7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공 원	856	2.0	소공원 1개소
공 공 시 설 공 간	7,944	19	
저 류 시 설	1,047	2.5	
주 차 장	894	2.1	노외주차장 1개소
도 로	6,003	14.4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3	598	6,003	1	67	689	1	400	4,774	1	131	540
중 로	2	531	5,314	-	-	-	1	400	4,774	1	131	540
소 로	1	67	689	1	67	689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22	17.5	국지 도로	400	노룡동 975-2	노룡동 975-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18	13	국지 도로	131	노룡동 975-2	노룡동 35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82	10	국지 도로	67	노룡동 888-3	노룡동 888-3	일반도로	-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7	주차장	노룡동 888-3번지 일원	-	증)894	894	-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	녹지	완충녹지	노룡동 975-2 일원	-	증)1,982	1,982	-	
신설	17	녹지	완충녹지	노룡동 975-2 일원	-	증)1,934	1,934	-	
신설	18	녹지	연결녹지	노룡동 354 일원	-	증)2,459	2,459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0)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5	미 룡 공 원	소공원	노룡동 888-3번지	-	증)856	856	-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용수량

구 분	용 수 수 요 량 (㎡/일)	비 고
계	97.0	계획용수량 : 97㎡/일
공 업 용 수	83.6	
생 활 용 수	13.4	

※ 사업부지와 인접한 미룡마을 상수도 D150mm에서 D100mm로 분기하여 사업부지로 공급 계획.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노룡동 975-2 번지	-	증)1,047	1,047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1)

-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량

구 분	오 . 폐 수 량 (m ³ /일)	비 고
계	62.6	계획오수량 : 35m ³ /일
생 활 오 수	30.7	
산 업 폐 수	31.9	

※ 산업폐수는 전량 위탁처리, 생활오수는 삼천포 하수종말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계획.

9. 재원조달계획

가. 자금조달계획

- 총 사업비 5,249백만원 중 사업시행자 자기자본금 3,192백만원,
 금융권 대출자금으로 2,507백만원 투입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계	5,249	3,249	2,000
용 지 비	2,094	2,094	-
조 성 비	2,955	955	2,000
기 타 비 용	200	20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2)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업 종	면 적(m ²)	구성비(%)
계	-	24,289	100.0
제 조 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24,289	100.0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가. 개발되는 토지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총 계	41,823	100.0	-
산업시설공간	24,289	58.1	사업시행자에 귀속
지원시설공간	2,611	6.2	사업시행자에 귀속
공공시설공간	14,923	35.7	-
도로	6,003	14.4	사천시에 귀속
저류지	1,047	2.5	사업시행자에 귀속
주차장	894	2.1	사업시행자에 귀속
공원	856	2.0	사천시에 귀속
완충녹지	3,664	8.8	사천시에 귀속
연결녹지	2,459	5.9	사업시행자에 귀속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3)

나. 시설물

구	분	규	격	수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	로	중로2류	B=17.5m	400m	사천시에 귀속	
		중로3류	B=13.0m	131m	"	
		소로1류	B=10.0m	67m	"	
우	수	우수암거	2.0x1.0	220.5m	"	
		우수암거	2@2.0x2.0	24m	"	
		우수관	D400	490m	"	
		우수연결관	D200	230m	"	
		우수맨홀	원형1호	7개소	"	
		우수집수정	0.8x0.8x1.8	6개소	"	
		우수집수정	3.0x4.8x2.5	1개소	"	
		우수받이	410x510x750	25개소	"	
		L형측구		616m	"	
		우수저류지	26 x 11.5	1개소	"	
		비점원오염처리시설		1개소	"	
오	수	오수관로	D300	100m	"	
		오수맨홀	원형1호	4개소	"	
상	수	송수관로	D50	274m	"	
		지 수 전		1개소	"	
포	장	ASP포장		46a	"	
		보도블럭포장	소형고압블럭	10a	"	
		자전거도로포장	탄성포장	5a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4)

구	분	규	격	수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조	경	곰솔	H3.0XW1.2XR8	57주	"	
	소나무	H5.5XW2.5XR25	17주	"		
	섬잣나무	H2.5XW1.2	55주	"		
	배롱나무	H2.5XR6	14주	"		
	이팝나무	H3.5XR10	41주	"		
	모과나무	H3.0XR8	19주	"		
	팽나무	H3.5XR12	18주	"		
	산벚나무	H3.5XB8	15주	"		
	광나무	H1.0XW0.3	2,044주	"		
	협죽도	H1.0XW0.4	1,168주	"		
	화살나무	H0.8XW0.4	63주	"		
	수수꽃다리	H1.5XW0.6	35주	"		
	꽃댕강	H0.8XW0.5	170본	"		
	꽃잔디	10cm	500본	"		
	해국	10cm	325본	"		
	상록패랭이	10cm	175본	"		
	잔디	줄떼	3557m ²	"		
	소공원		1개소			
조경시설물	막구조 파고라	H2.8XL4.2XB18.3	2조	"		
	클로바 파고라	H2.2XL6.3XB6.3	1조	"		
	육 각 정 자	H2.6XL6.0XB6.0	1조	"		
	평 의 자	L1.6XB0.6	40조	"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26개소	"		
	LED정보등		2개소	"		
	교통단속카메라		1개소	"		
구조물	전석쌓기		60m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5)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역명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64,366,055.7 (70,196,437.0)	-	464,366,055.7 (70,196,437.0)	()는 해면부	
도 시 지 역	계	90,285,319.7 (4,380,437.0)	(증)21,604.0	90,306,923.7 (4,380,437.0)	()는 해면부	
	소계	8,170,901.8	-	8,172,791.8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217,930.0	-	217,93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3,699,485.0	-	3,699,485.0	
		제2종일반주거지역	4,030,928.3	-	4,030,923.3	
		제3종일반주거지역	29,548.5	-	29,548.5	
		준주거지역	196,010.0	-	196,010.0	
		상업지역	소계	1,221,550.0	-	1,221,550.0
	일반상업지역	1,103,040.0	-	1,103,040.0		
	근린상업지역	118,510.0	-	118,510.0		
	공업지역	소계	10,149,074.6 (3,193,637.0)	(증)21,604.0	10,170,678.6 (3,193,637.0)	()는 해면부
		일반공업지역	9,370,652.8 (3,193,637.0)	(증)21,604.0	9,392,229.8 (3,193,637.0)	
		준공업지역	778,421.8	-	778,421.8	
	녹지지역	소계	69,556,993.3	(감)8,551.0	69,548,442.3	
		보전녹지지역	4,054,249.0	-	4,054,249.0	
		생산녹지지역	7,490,649.0	-	7,490,649.0	
		자연녹지지역	58,012,095.3	(감)8,551.0	58,003,544.3	
	미지정(해면부)		1,186,800.0	(감)13,053.0	1,173,474.0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6)

구역명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비 도 시 지 역	계	374,080,736.0 (65,816,000.0)	-	374,080,736.0 (65,816,000.0)	()는 해면부
	소계	118,129,858.0	-	118,129,858.0	
	보전관리지역	45,327,978.0	-	45,327,978.0	
	생산관리지역	29,779,995.0	-	29,779,995.0	
	계획관리지역	39,884,573.0	-	39,884,573.0	
	관리지역미분류	3,137,312.0	-	3,137,312.0	
	농림지역	167,146,995.0	-	167,146,995.0	
	자연환경보전지역	88,803,883.0 (65,816,000.0)	-	88,803,883.0 (65,816,000.0)	()는 해면부

주)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08-618호(2008. 12. 4)참조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1,823	41,823	41,823	100.0	
공업지역	20,219	증)21,604	41,823	100.0	
일반공업지역	20,219	증)21,604	41,823	100.0	
자연녹지지역	8,551	감)8,551	-	-	
미지정(해면부)	13,053	감)13,053	-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7)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사천시 노룡동 975-2번 지 일원	계		21,604	250	사천 미룡 일반산업 단지 지정에 따라 자 연녹지 및 관리지역 미분류 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 고자 함.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8,551		
		미지정 (해면부)	일반공업지역	13,05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미룡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888-3번지 일원	-	증)41,823	41,82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비고
신설	-	미룡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888-3번지 일원	41,82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 법」에 의한 산업단지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 리를 위하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 정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8)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41,82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24,289	58.1	
지 원 시 설 용 지	2,611	6.2	
녹 지 시 설 용 지	6,979	16.7	
녹 지	6,123	14.7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공 원	856	2.0	소공원 1개소
공 공 시 설 용 지	7,944	19	
저 류 시 설	1,047	2.5	
주 차 장	894	2.1	노외주차장 1개소
도 로	6,003	14.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3	598	6,003	1	67	689	1	400	4,774	1	131	540
중 로	2	531	5,314	-	-	-	1	400	4,774	1	131	540
소 로	1	67	689	1	67	689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1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22	17.5	국지 도로	400	노룡동 975-2	노룡동 975-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18	13	국지 도로	131	노룡동 975-2	노룡동 35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82	10	국지 도로	67	노룡동 888-3	노룡동 888-3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2-33	B=17.5m, L=400m (A=4,774m ²)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기반시 설용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결정하고자 함.
-	중로3-18	B=13.0m, L=131m (A=540m ²)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용지 및 미룡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결정하고자 함.
-	소로1-82	B=10.0m, L=67m (A=689m ²)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및 공용주 차장 진입을위한 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7	주차장	노룡동 888-3번지 일원	-	증)894	894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7	주차장	주차장신설 (A=894㎡)	산업단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	녹지	완충녹지	노룡동 975-2 일원	-	증)1,982	1,982	-	
신설	17	녹지	완충녹지	노룡동 975-2 일원	-	증)1,934	1,934	-	
신설	18	녹지	연결녹지	노룡동 354 일원	-	증)2,459	2,459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6	완충녹지	완충녹지 (A=1,982㎡)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차폐 및 경관기능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함.
17	완충녹지	완충녹지 (A=1,934㎡)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차폐 및 경관기능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함.
18	연결녹지	연결녹지 (A=2,459㎡)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농지와 주거지역에 접하는 부분에 경관 및 차폐기능의 연결녹지를 설치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1)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5	미 룡 공 원	소공원	노룡동 888-3번지	-	증)856	856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5	미룡공원	소공원신설 (A=856㎡)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의 휴식을 제공 할 수 있는 소공원을 설치하고자 함.

(4) 방재시설

(가) 우수지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우수지	저류시설	노룡동 975-2번지	-	증)1,047	1,047	-	

○ 우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	우수지	저류시설 (A=1,047㎡)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2)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	A	24,289	사천시 노룡동 874 일원	24,289	산업용지
-	B	6,979	사천시 노룡동 975-2 일원	1,982	완충녹지
-			사천시 노룡동 975-2 일원	1,682	
-			사천시 노룡동 354 일원	2,459	연결녹지
-			사천시 노룡동 888-3 일원	856	공 원
-			C	6,003	사천시 노룡동 975-2 일원
-	사천시 노룡동 975-2 일원	540			중로3-가 마을도로확장
-	사천시 노룡동 888-3 일원	689			소로1-가 지원시설 진입로
-	D	4,522	사천시 노룡동 888-3 일원	2,611	지원시설
-			사천시 노룡동 975-2 일원	1,047	저 류 지
-			사천시 노룡동 888-3 일원	894	주 차 장
합 계		41,823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3)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권장용도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D-1	지정용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권장용도	직원전용식당, 체력단련장, 휴게실, 기숙사, 녹지, 주차장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4)

(계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D-3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권장용도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제조업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1) 소공원
- 가) 공원조성계획
- 부지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노룡동 888-3번지	-	856	856	
신 설	도로 및 광장		-	170	170	
신 설	편익시설		-	43	43	
신 설	공원녹지		-	656	656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5)

□ 시설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²)	시설규모(m ²)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856	-	-	
신 설	도로 및 광장	170	-	-	산책로, 광장
신 설	편익시설	43	-	-	파고라, 정자
신 설	공원녹지	656	-	-	녹지

□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면 적 (m ²)	위 치	시설규모(m ²)			비 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856		-	-	-	
도로 및 광장	1	산책로 및광장	170	노룡동 888-3번지	-	-	-	
편익시설	2	편익시설	43		-	-	-	
공원녹지	3	공원녹지	656		-	-	-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시설 용지

제3장 주차장 용지

제4장 지원시설 용지

제5장 기타사항

제6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7)

미룡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되는 “사천 미룡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며,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미룡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역에 적용한다.

제3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6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 제3장은 주차장용지, 제4장은 지원시설용지, 제5장은 기타사항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8)

- ④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 내에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는 용도라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나.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다.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라.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마. “최고층수”라 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바. “최저층수”라 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3.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목과 같다.
 - 가.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29)

나.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3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다. “강조색”이라 함은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 용지

제1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제내용	
산업시설용지	허용 용도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A-1, A-2)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 ③ 세부업종별 배치계획 등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름
	불허 용도	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②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③ 세부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0)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250	-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산업시설용지의 용적률은 250%이하, 건폐율은 70%이하로 한다.

③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기업이 자유롭게 건축하도록 유도한다.

제3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건축물이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제4조 (건축물의 색채)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교차로 등)에는 때에 따라 원색계통의 순도 높은 색을 사용할 수 있음

제5조 (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1)

③ 개별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3장 주차장 용지

제1조 (주차장)

- ① 주차장용지는 원칙적으로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을 금지한다.
- ② 주차장 용지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제내용	
주차장	허용 용도	①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 용도	①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③ 주차장용지의 건폐율·용적율·높이는 결정도에 지정된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시설 용지

제1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제내용	
지원시설용지	허용 용도	① 사천시계획조례 제29조4호(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일부 (직원전용식당, 체력단련장, 휴게실, 기숙사, 녹지, 주차장) ② 세부배치 계획 등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불허 용도	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③ 세부사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름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2)

제2조 (건축물의 밀도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250	-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지원시설용지의 용적률은 250%이하, 건폐율은 70%이하로 한다.

③ 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민간이 자유롭게 건축하도록 유도한다.

제3조 (건축물의 배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전면도로변 방향으로 하며,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건축물의 형태)

① 건축물의 높이는 연접건축물과 조화로운 층수를 권장한다.

② 1층부의 높이는 4m로 권장하고 지붕, 출입구, 계단실, 창문 등의 부가적인 요소 디자인은 가급적 박공모양의 디자인을 의미하며 이웃하는 건축물과의 통일성을 도모할 것을 권장한다.

③ 상가서터형식은 투시형으로 하고, 사가출입부의 단차발생을 금지한다.

④ 보행의 편의성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1층부에 에어컨 등의 설비 설치를 금지하고 냉난방시설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도시가시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하다.

⑤ 입면디자인시 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제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가로변의 기존 건축물과 형태, 자료, 색채가 조화되도록 권장한다.

② 건축물 외장재료는 지구의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3)

- ③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기본적으로 유채색 계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6조 (차량출입구)

- ①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해당필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좁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7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 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한 장애인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함안군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① 1개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②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소재를 활용토록 한다.
- ③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금지하고 가로형, 문자형, 지주형 간판을 권장한다.
- ④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 등에 따른다.

제2조 (가이드라인)

-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② 산업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옥외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본 지침과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함안군과 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4)

제6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행위에 적용된다.

제2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른다.
-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규정)

본 지침 시행 전 건축 관련 승인된 사항이 본 지침과 상이할 경우 승인시기와 관계없이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본 시행지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5)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

번호	X좌표	Y좌표	번호	X좌표	Y좌표
1	112662.3050	165505.7830	14	112766.3079	165191.6801
2	112710.2877	165477.3181	15	112763.3419	165190.9361
3	112753.3959	165484.6201	16	112631.5379	165342.1371
4	112795.6389	165406.1131	17	112611.0299	165381.2441
5	112797.8005	165407.2818	18	112616.6899	165428.4921
6	112834.3469	165330.8491	19	112675.4996	165486.3269
7	112838.5209	165333.1591	20	112662.2328	165339.6820
8	112850.6089	165301.7881	21	112672.0210	165328.3158
9	112847.5209	165299.2131	22	112715.8426	165277.4294
10	112838.1109	165299.2681	23	112765.1451	165320.0268
11	112815.8839	165276.6841	24	112772.7121	165326.5646
12	112808.6949	165264.6621	25	112786.3326	165338.3327
13	112768.4339	165193.8024	26	112791.4256	165289.8710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공단조성과) 및 사천시청(도시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6)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토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사천시 노룡동	888-3	장	8,878	8,878	삼원전기건설㈜	사천시 별리동 26-12			
2	사천시 노룡동	888-5	장	1,453	1,453	삼원전기건설㈜	사천시 별리동 26-12			
3	사천시 노룡동	976	도	470	364	국(건설부)				
4	사천시 노룡동	975-2	잡	13,071	13,071	국(재정경제부)				
5	사천시 노룡동	975	제	893	893	국(건설부)				
6	사천시 노룡동	882	입	843	843	국(재무부)				
7	사천시 노룡동	881	입	803	803	삼원전기건설㈜	사천시 별리동 26-12			
8	사천시 노룡동	884	입	969	969	삼원전기건설㈜	사천시 별리동 26-12			
9	사천시 노룡동	883	입	1,028	1,028	국(재무부)				
10	사천시 노룡동	879	입	1,025	1,025	국(재무부)				
11	사천시 노룡동	880	입	982	982	국(재무부)				
12	사천시 노룡동	876	입	1,012	1,012	국(재무부)				
13	사천시 노룡동	877	입	1,015	1,015	삼원전기건설㈜	사천시 별리동 26-12			
14	사천시 노룡동	878	입	340	340	국(재무부)				
15	사천시 노룡동	874	대	2,750	2,750	삼원전기건설㈜	사천시 별리동 26-12			
16	사천시 노룡동	875	대	321	321	임기오	사천시 선구동 58-64			
17	사천시 노룡동	888-9	대	1,208	1,208	임기오	사천시 선구동 58-64			
18	사천시 노룡동	849	대	2,060	2,060	임기오	사천시 선구동 58-64			
19	사천시 노룡동	354	대	2,259	2,259	임기오	사천시 선구동 58-64			
20	사천시 노룡동	859-1	도	2,308	140	국(농수산부)				
21	사천시 노룡동	941-13	구	120	1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2	사천시 노룡동	859	구	4,700	74	국(농수산부)				
23	사천시 대포동	457-9	잡	7,087	32	국(재정경제부)				
24	사천시 대포동	164-2	답	2,929	183	정윤문	사천시 노룡동 611			
합 계				58,524	41,823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7)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88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미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수지)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 로 ▭ 중로2-가호선 : L=400m, B=17.5m

| 중로3-가호선 : L=131m, B=13m

└ 소로1-가호선 : L=67m, B=10m

나. 주차장 : A=894m²

다. 공 원 : A=856m²

라. 녹 지 : A=6,123m²

▭ 완충녹지① A=1,982m², 완충녹지② A=1,682m²

└ 연결녹지③ A=2,459m²

마. 유수지 : A=1,04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삼원전기건설(주) 대표이사 임기오

나. 주 소 : 사천시 벌리동 26-12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2013. 12. 31.

6. 사 업 비 : 1,700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8. 관계도서 : 실음생략 (사천시청 공단조성과에 비치)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8)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사천시 노룡동	888-3	장	8,878	2,738	삼원전기건설(주)	사천시 벌리동 26-12			
2	사천시 노룡동	888-5	장	1,453	498	삼원전기건설(주)	사천시 벌리동 26-12			
3	사천시 노룡동	976	도	470	109	국(건설부)				
4	사천시 노룡동	975-2	잡	13,071	8,910	국(재정경제부)				
5	사천시 노룡동	975	체	893	323	국(건설부)				
6	사천시 노룡동	882	임	843	278	국(재무부)				
7	사천시 노룡동	881	임	803	326	삼원전기건설(주)	사천시 벌리동 26-12			
8	사천시 노룡동	880	임	982	85	국(재무부)				
9	사천시 노룡동	849	대	2,060	430	임기오	사천시 선구동 58-64			
10	사천시 노룡동	354	대	2,259	773	임기오	사천시 선구동 58-64			
11	사천시 노룡동	859-1	도	2,308	44	국(농수산부)				
12	사천시 노룡동	941-13	구	120	1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사천시 노룡동	859	구	4,700	74	국(농수산부)				
14	사천시 대포동	457-9	잡	7,087	32	국(재정경제부)				
15	사천시 대포동	164-2	답	2,929	183	정윤문	사천시 노룡동 611			
합 계				48,856	14,923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39)

고 시 문

사천시 고시 제2012 - 178호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01일

사 천 시 장

점 용 자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하일규	주 소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사천대로 1803
하 천 명	용정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일원		
	면 적	영구 179㎡, 임시 812㎡		
	기 간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임시) 허가일로부터 '12.12.30. 까지 (공사기간 : 2012.11 ~ 2012.12.30)		
	목 적 및 개 요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연락교량 및 토출관로 설치 - 연락교량신설(L=36.2m, B=4.5m) - 토출관로매설(L=55.1m, D=0.8m, 매설깊이 = 2.0m)		
열람서류 : 위치도 및 관련서류 2부(건설과 비치)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40)

사천시 고시 제2012-1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변경 허가번호 : 제2012-4호
2. 점용·사용 변경 허가년월일 : 2012년 11월 1일
3.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송포동 1344-1번지선 공유수면
4. 점용·사용 허가 면적
 - 1,302㎡
5. 점용·사용 변경 허가사항
 - 점용·사용 목적
 - 당초 : 수상동력기구 접안용 부잔교 및 관리자
 - 변경 : 수상동력기구 접안용 관리자 및 휴게음식점
 - 점용·사용 기간
 - 당초 : 2009년 11월 1일 ~ 2012년 10월 31일
 - 변경 : 2012년 11월 1일 ~ 2015년 10월 31일
6.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박중균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벌용길 47-25(벌용동)
7. 점용·사용 변경 허가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41)

허 가 조 건

1. 기 협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의 건은 기존 수상동력기구 접안용 부잔교 관리동에 관광객의 편의 제공시설인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건으로, 해양환경의 지속적인 보전 및 불시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완료 후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기존 시설물에 증축은 없으나, 공사 중 주변해역에 오탁방지막 등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공유수면 상에 추락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이용객들이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쓰레기(폐기물)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함을 시설물 주변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5. 휴게음식점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와 관련하여 육상부에 저장탱크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으로 저장탱크 누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선박의 이·접안 및 유류 급유 시 유류유출 사고를 대비하여 유흡착포 등 해양오염방제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7.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시설물 설치에 영향을 받는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8. 운영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9.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접안용 관리사와 분리 등)을 갖추고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수상레저사업등록증 등)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 내 영업을 조건으로 영업신고 수리 가능합니다.(단,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함)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42)

10.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될 경우 피 허가자 부담으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
11.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등록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후 허가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2.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조건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상기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43)

사천시 고시 제2012-18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1-3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1년 5월 23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사천시 서포면 송도~비토도 사이를 1992년 도로개설(지방도 1005호선)로 인하여 해수유통이 단절되어 해양오염과 퇴적이 심화됨으로써, 갯벌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기존도로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갯벌의 복원.
 - 가도(L=111m, B=8m) 및 가물막이(L=126.9m, B=4m)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8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내역
 - 가도(L=111m, B=8m) 및 가물막이(L=126.9m, B=4m) 설치 후 철거 완료
6. 공사기간
 - 2011년 5월 23일 ~ 2012년 9월 25일
 - 동 사업 전체 공정 중, 가물막이(2012. 6. 5. 제거)와 가도부(2012. 8. 14. 제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부에 대한 공정은 2012. 8. 14. 완료
7. 점용·사용 승인(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12. 11. 2.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44)

고 시 문

사천시 고시 제2012 - 185호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사 천 시 장

점 용 자	성 명	사천시장 (재난관리과장)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하 천 명	사천강(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11번지 일원		
	면 적	영구 149.00㎡, 임시 378.82㎡		
	기 간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임시) 허가일로부터 '13.01.31. 까지 (공사기간 : 2012.11 ~ 2012.01.31)		
	목적및 개 요	사주·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토출관로 매설 - 토출관로매설(L=9.0m, D=1.5m, 2개소) - 배수BOX(7.5*2.5*3.3, 7.5*1.25*2.3, 4.0*1.25*10.2, L=15.8m)		
열람서류 :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사 천 시 공 보

제295호(45)

공 고

사천시 공고 제 2012- 715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천시 비토리 일원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건과 관련한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사 천 시 장

심의내용

- 일 시 : 2012. 10. 15
- 장 소 : 시청 회의실
- 심의자 : 사천시 도로명주소위원 (8명)
- 심의안건
 - 서포면 비토리 일원 별주부전 테마관련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의 건
 - 도로명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주체 결정의 건

심의결과 : 부결